

##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모색\*

Searching for Laws and Systems to Revitalize Private Archives

손동유(Sohn, Dong You)\*\*

1. 머리말
2. 현재 왜 민간 아카이빙이 화두가 되고 있는가?
  - 1) 법과 제도의 영향
  - 2) 디지털 환경의 정착
  - 3) 마을공동체의 기록활동
3. 민간기록 관리기관의 양상
  - 1) 관련 기관 현황
  - 2) 국가기록원의 활동
4. 민간 기록관리법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
  - 1) 현황과 특징
  - 2) 민간기관 관리기관 협의체의 필요성
5. 맺음말

\* 이 논문은 한국기록학회 2021년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를 위한 법 제정 모색」의 내용을 수정·보완한 것임.

\*\* (협)아카이빙네트워크연구원 원장/인천대 문화대학원 초빙교수(ani.dysohn@gmail.com).

■ 투고일: 2021년 06월 30일 ■ 최종심사일: 2021년 07월 08일 ■ 최종확정일: 2021년 07월 09일.

■ 기록학연구 69, 7-33, 2021, <https://doi.org/10.20923/kjas.2021.69.007>

## 〈초록〉

공공기록물 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지방기록관의 필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관한 논의는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한다.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민간기록 관련 국가기관은 여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다수이다. 따라서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구성하여,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 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주제어 : 민간 아카이브,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 공공기록물 관리법, 마을공동체, 민간기록관리법**

## 〈Abstract〉

From the beginning of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of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there has been a steady discussion on the establishment of local archives. Local archives include not only administrative records of local governments, but also private archives such as containing the lives of residents. Along with the academic discussion, there have been movements for local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Currently, interest and discussion on private archiving are in the historical flow. In addition, private archiving has become a social concern because of the establishment of systems such as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establishment of a digital environment, and the spread of the meaning and value of village community activities. There are several government agencies related to private archiving, and the grounds for performing their work are different, and there are many central administrative agencies to which they belong.

Therefore, I propose that the National Archives take the lead and form a 'Consortium of Private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 should promote first, cooperation of collection information and archives, second, coordination of tasks and functions between institutions, and third, establishment of a nationwide private archives management system. Now is our chance. Instead of reacting on an ad hoc basis, respond systematically with a long-term perspective.

**Keywords : private archives, consortium of private archives management institutions,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maeul-community, law of private archives**

## 1. 머리말

지금까지 기록학계에서 민간기록에 대한 논의는 간헐적이지만 계속 되어 왔다. 공공기록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sup>1)</sup> 지방기록관<sup>2)</sup>의 필

---

1) 현행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의 최초 제정 당시 명칭은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고, 공포일은 1999.01.29, 시행일 2000.01.01이다.

2) 1999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 당시 '제7조 지방기록물관리기관'에서는 "특별시·광역시 또는 도는 당해지방자치단체 및 그 관할구역안에 있는 시·군

요성 및 지방기록관 설립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는 논의의 중심에는 지역의 역사와 주민들의 삶을 담고 있는 민간기록이 자리하고 있었다(박찬승, 2000; 지수걸, 2001; 지수걸, 2009; 이영학, 2010 등).

이들 논의를 토대로 기록문화유산을 제고시키는 지방기록문화 운동을 제안하기도 했는데, 첫째, 모든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공공기록물을 제대로 생산하고, 관리하고, 공개할 수 있게 만드는 운동, 둘째, 역사적 가치가 풍부한 해당 지역의 모든 기록물을 수집 정리하여 역사적 말하기와 글쓰기를 장려하는 운동, 셋째, 이같은 역사적 말하기와 글쓰기를 통해서 행정의 책임성과 투명성은 물론이고 궁극적으로 행정의 효율성도 달성하려는 운동을 의미한다(지수걸, 2009).<sup>3)</sup>

또한, 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관료사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 산하에 ‘(가)지방기록문화창달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록을 제대로 관리하려는 노력을 하면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도 있었다(이영학, 2010).

실제 움직임도 있었다. 지방분권화와 자치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지역기록정보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지방기록관을 설립해야 한다는 아래로부터의 기록관리 개혁운동이 전개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은 「대전·충남 기록문화 발전을 위한 포럼」(2002)과 「경기기록문화포럼」(2003)의 설립으로 조직화되었다.

이들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행정의 책임성·투명

---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구(이하 “관할내 地方自治團體”라 한다)의 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지 아니하고 직접 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하여 지자체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지방기록물관리기관’으로 칭했다. 따라서 이 시기 ‘지방기록관’에 대한 논의는 2006년 법 개정 이후 ‘지방기록물 관리기관’을 특별, 광역 자치단체의 영구기록물관리기관으로 정의한 것과는 달리 모든 지자체의 기록물관리기관을 의미하는 것이다.

3) 대전·충남기록문화포럼 「창립취지문」 및 심포지움 자료집, 『대전·충남 지역 기록문화의 현황과 과제』(2002. 5)에서 제안된 내용을 지수걸, 2009 에서 거듭 제안하였다.

성 강화’, ‘주민 참여 정치 활성화’는 물론이고 ‘지역사회에 유의미한 지식·정보 축적’, ‘자치단체의 정책개발 능력 강화’ 등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기록자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여기서 ‘기록자치’란 “지역주민과 자치단체(의회)가 기록관리(문화)의 소중함을 충분히 인지한 가운데, 자기 지역에서 생산된 자기 지역의 유의미한 지식과 정보를 자기 지역 내에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록관리 전문기관’(archives, 법률상의 ‘지방기록관리기관’)을 설립하여 자기 지역의 특성이나 사정에 맞는 기록관리 원칙(생산·관리, 폐기·보존, 공개·활용 등에 대한 원칙)에 따라 자주적으로 생산·관리하고 공개·활용하는 제도나 시스템”을 지칭한 것이었다. (지수걸, 2009)

지방 자치와 분권 그리고 지방기록관리의 중요성을 인식한 단체들의 활동은 기록관리 개혁운동의 폭을 넓히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기록학계와 시민단체의 기록관리 개혁운동은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의 조직화로 구체화되었다. 2004년 11월 23일 한국국가기록연구원, 경기기록문화포럼, 참여연대 등 9개 단체로 구성된 「국가기록개혁네트워크」는 국가기록개혁운동의 새로운 도약과 국가기록관리체계에 대한 상시적 감시를 목표로 조직되었다(곽건홍, 2006).

이 시기 참여정부에서는 기록관리 분야의 개혁과 진전을 이룬 것은 사실이지만 여러 부분에서 한계를 드러내기도 했고, 민간 기록분야에서도 한계를 보였다. 2005년 4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대통령에게 보고한 기록관리 혁신 로드맵(‘1차 로드맵’)에서는 사료 수집 및 편찬 기능을 통합하는 즉, 국가기록원과 국사편찬위원회를 통합한 「국가역사기록위원회안」이 제기된 바 있으나, 시급한 것은 기록관리 프로세스와 시스템을 통한 기록관리 혁신이며 조직 문제는 차후에 협의하기로 결정되어, 일단은 공공의 행정기록에 집중하는 것으로 논의가 일단락되었다(김득중, 2005). 비로소 2006년에 기록관리법을 전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민간기록의 수집’ 내용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공공기록물 관

리에 관한 법률'에 제10장 민간기록물 등의 수집·관리를 두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개인이나 단체가 생산·취득한 기록정보 자료 등 국가적으로 영구히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민간기록물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고, 민간기록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에게 그 민간기록물을 국가지정기록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으며,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국가지정기록물의 지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련 민간기록물의 목록 및 내용의 확인, 그 밖에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게 하였다. 그런데 그 내용을 꼼꼼히 보면 민간기록 소장자나 관리자가 기록관리의 협력주체라기 보다는 국가기록원의 수집, 조사 대상으로서만 정하고 있어서 일방적으로 관계가 설정되어 있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국가기록원에서 2009년에는 주요 민간기록물 발굴·수집을 위한 「내고장 역사찾기」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민간 기록물 정리사업 2,460개 일자리에 연인원 약 30만 명 고용”, “기록물 기술 사업으로 연인원 약 3만 명 고용”, 국내외 유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국제기록엑스포 개최를 통해 “관광수요 연간 7만 명, 고용유발 연인원 25만 명” 등<sup>4)</sup>으로 발표했는데, 그 결과는 이미 허언으로 검증된 바 있다. 이것은 해프닝으로 넘길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다. 국가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국가기록원이 본질적이지 않은 문제를 전면에 내걸고 홍보를 한 것도 문제이지만, 현실성 없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발표함으로써 오해와 혼돈을 야기했기 때문이다. 그 배경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과 평가를 통하여 향후 국가기록원의 위상과 기능을 정립해 나가는 데 참고할 필요가 있다.

---

4) 당시 국가기록원에서는 “기록관리분야, 9천개 일자리 만든다 : 국가기록원, 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수립, 일자리 창출 등 지원”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이 시기 학계의 논의를 보면, 지방의 역사기록, 민간기록의 범주에서 마을공동체라는 구체적인 단위로 논의가 구체화 되었다. 2008년 아카이브이자 복합문화공간으로서 ‘마을아르페’가 주창되었고(이영남, 2008), 현장민주주의·생활민주주의 실천의 한 형태로 마을아카이빙운동이 제안되었다(김익한, 2010). 논의가 심화되면서 ‘보통의 시민들’의 삶과 직결된 아카이브를 만들어 가는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전제로 보통 사람들의 일상을 미세한 영역으로 범주화하며, 개인(집단)의 행위와 경험을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하고, 아래로부터의 역사를 재구성하기 위해 개인(집단)의 일상적 삶을 기록화 하는 것은 물론 인문학적 관점에서 기록을 수집·평가·선별하여 보존하는 조직 또는 이를 위한 시설·장소로서 ‘일상 아카이브’ 설립 필요성이 제기되었다(곽건홍, 2011). 이러한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활동은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위한 현재의 운동이며, 공동체 아카이브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를 정착시키고 건전한 공동체를 만들며, 이를 통해 그들의 권리와 의미를 보호하는 기능을 할 것이고, 기록의 문화적 역할을 강조하고 기록의 범주를 광범위하게 확장시킴으로서 현 사회의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성격을 가질 수 있다고 의미 부여하였다(윤은하, 2012).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기록 활성화를 위해 조례 제정이 필요하며 내실 있게 내용을 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있었다. (이정은, 김유경, 김건, 2020) 민간기록물관리와 관련한 조례의 제정은 지방자치단체가 실현하고자 하는 정책을 표현하는 법제적 근거라고 전제하고, 현재 민간기록물관리 조례를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0여 곳으로 아직 그 제정현황은 미미하지만 최근 지방자치단체의 민간기록물관리에 대한 관심 증대와 이를 방증하는 제정 추이는 긍정적으로 분석했다. 또한 민간기록물의 가치를 문화적 기록유산으로 인식하고, 이를 지역의 자산으로 활용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도 낙관적으로 보았으나, 제정된 조례의 내용을 분석해 볼 때, 각 자치단체의 조례 내용은 대동소이하며,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이미 제정된

자치단체의 조례를 그대로 차용하는 형식으로 제정되고 있어서 실질적으로 지역의 특성과 정체성을 대변할 수 있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주제 발굴과 함께 조례의 실효성을 위한 법적 보완 근거 마련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마을공동체는 물론이고 정당, 기업, 문화재단, 문화원, 중간지원조직, NGO, NPO 등에 대한 포괄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손동유, 2020). 이 글에서는 정당은 국고의 투입규모와 비율,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할 때, 공공기관으로 간주하여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민간아카이빙에 관한 기록관리계의 논의는 학계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 기록관리학의 출범 시점부터 지속되어 왔다. 더욱이 학계에서만 논의가 아니라 시민사회 영역과 협력하면서 실천적인 운동을 모색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정부의 기록관리 정책, 법과 제도의 변화에도 일정부분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뚜렷한 성과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민간 아카이빙에 대한 현재적 논의와 실천은 지난 시기 기록관리계의 노력을 계승하고 발전하는 측면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민간 영역에서 자발적인 아카이빙 활동이 날로 늘어나는 지금 현장과 연대하면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민간아카이빙의 활성화를 추구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이다.

## 2. 현재 왜 민간 아카이빙이 화두가 되고 있는가?

### 1) 법과 제도의 영향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학계 및 관계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아카이빙에 대한 논의와 시도가 있어 온 것은 사실이다. 현재 민간 아



카이빙에 대한 관심과 논의는 갑자기 일어나게 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간의 과정과 맥락을 바탕으로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민간 아카이빙에 대한 관심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서는 기록관리계를 넘어서 사회에 대한 넓은 시각의 관찰이 필요하다. 기록관리가 우리 사회에 자리 잡기 시작하던 초기에만 하더라도 매우 낮설었던 ‘아카이브’, ‘아카이빙’이 이젠 익숙하게 사용되는 배경에는 어떤 요인들이 있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법과 제도의 영향이다. 최근에는 주변에서 크고 작은 공사를 할 때면 안내판을 설치하여 무슨 공사를 언제까지 하는 것인지 등을 설명한다. 담당자 연락처도 적어두어 공사에 대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궁금한 사항이 있는 사람들이 의견을 전달할 곳을 알려주고 있다. 공공기관에서 하는 일에 대하여 시민이 질문하고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면 항의하고 관련 기록을 요구하는 것이 일상적인 시대가 되었다. 공공기관에서는 시민에게 설명할 때는 관련 기록과 정보를 근거로 한다. 이제 공공기관이 업무의 배경이자 결과로서 기록을 정확하게 만들고 남겨서 시민들의 요구가 있으면 열람해 주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국민의 공개 청구 및 공공기관의 공개 의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國政)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1996년 제정되었다. 이어 1999년에는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구현과 공공기록물의 안전한 보존 및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시민들은 이 법들의 이름과 내용을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이 법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를 활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이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의 제정과 시행으로 오늘날 많은 시민들은 사회가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록은 꼭 필요한 것이고,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기록을 생산, 관리, 서비스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 되었다. 이전까지 무겁고, 엄숙한 이미지로 인식되었던 기록이 이제는 실용적이고 생활적인 이미지로 우리사회에 자리 잡아 나가고 있다고도 볼 수 있다.

## 2) 디지털 환경의 정착

다음으로는 디지털 환경이다. 사람들은 일상적으로 하는 소비품 구매, 식당과 대중교통 이용, 교육, 모임, 취미, 직업 등에서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삶을 살며 사고를 하고 있다. 이제는 “누구나 기록을 만들 수 있는 세상이다”라는 선언이 새롭지 않다. 누구나 기록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고, 누구나 실시간 많은 양의 기록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다. 나아가 누구나 자신에게 유용한 기록과 정보를 선별할 수 있다. 각종 디지털 플랫폼의 장단점을 분석하고, 자신에게 필요한 기록과 정보를 원활하게 취할 수 있는 환경에 적응해 가고 있다. 이렇듯 이제는 생활 필수품이 되어버린 스마트 폰으로 시민들은 생산, 수집, 분류, 정리, 보존, 활용에 이르는 모든 아카이빙 과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다. 스스로 표현하지 않고 느끼지 못할 뿐이지 아카이빙이 일상화 되고 있다.

또한, 남녀노소 폭넓게 활용하고 있는 인터넷 공간에서도 특정 자료들을 모아놓고 ‘아카이브’라고 이름 지은 곳은 어렵지 않게 만나곤 한다. ‘아카이브(archives)’가 영구적인 보존가치 있는 기록물, 또는 그런 기록물을 다루는 기관이나 기구를 의미한다는 사전적 의미가 무색할 정도로 많은 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저마다의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TV 방송에서도 아카이브와 관련된 많은 프로그램이 생겨나고 있는 것은 사람들에게 ‘아카이브’가 친숙해지고, 일상화 되고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현상이기도 하다. 그러나 ‘아카이브의 일상화’가 곧 ‘일상 아카이브’를 의미하는 것은 의미는 아니다. 여전히 TV 프로그램에서 다

루는 ‘아카이브’는 중요한 사건, 유명한 인물을 중심으로 기억과 기록을 넘나들고 있고, 특별한 성과에 주목하는 경향이 있다. 바로 이점이 ‘일상 아카이브’와의 차이이기도 하다.

일상 아카이브는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생활이 아카이브가 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제도권 역사는 중앙, 권력, 명망가, 이진 사람, 많이 가진 사람들의 기록 즉, 기록을 많이 남겼거나, 남길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일상 아카이브는 보통 사람들의 삶이 역사의 소재가 되어 보통 사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중요한 출발점이 된다. 이런 이유로 민간아카이빙의 핵심적인 부분이 일상을 기록화 하는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 3) 마을공동체의 기록활동

‘마을공동체’들이 추진하는 ‘마을 기록 활동’ 또한 아카이브를 익숙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이다. 우리는 지난 권위주의 정권시절 국가주의가 지배하는 산업화 과정을 거치며 사람들은 ‘성실’ 그 자체를 목표로 ‘하면 된다’는 주문을 외우면서 ‘빨리 빨리’, ‘열심히’ 살아야 했다. 시민의식의 성장은 불의에 저항하며 제도적 민주주의를 이루어내고 있고, 인권을 바탕으로 다양한 가치를 존중하는 삶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지난 시기 개인주의적이고 경쟁논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삶에 대한 성찰을 하면서 새로운 삶과 사회적 관계의 모색이 시도되었다. 바로 “마을공동체”의 출현이다. ‘마을’이라는 정감어린 단어와 ‘공동체’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실천적인 두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진 마을공동체가 추구하는 공동체 삶의 지향은 ‘민주주의’를 넘어서는 그 무언가를 의미한다고 본다.

이는 해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고 있고, 그러면서 진화해 오고 있다. 그 과정에서 함께 활동한 사람들이 자신들

의 삶, 관계, 활동을 기록으로 남기거나, 그 흔적을 담고 있는 기록을 스스로 모으고 간직하면서 관리하고자 하고 있다. 이 같은 ‘마을 기록 활동’이 전국의 여러 지역에서 동시에 벌어지고 있다. 마을공동체 스스로 자발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지자체 또는 지역 문화기관과 협력하여 기록 활동을 하기도 한다.

이처럼 법과 제도의 뒷받침(인프라), 디지털 환경의 정착(방법), 일상과 공동체의 중요성 확산(의식)으로 아카이빙은 사회 일반에 깊숙이 자리 잡아 나가며 한 단계 성숙해지고 있다.

### 3. 민간기록 관리기관의 양상

#### 1) 관련 기관 현황

수집, 관리 대상에 민간에서 생산, 소장하고 있는 기록을 포함하여 설립, 운영되는 법정기관은 이미 여러 곳이 있다. 대표적으로 교육부 소속기관인 국사편찬위원회는 「사료의 수집·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고 있는데, 이 법에서 “사료”를 역사 연구의 자료가 되는 기록(문서·도서·사진·금석문·서화·시청각물·구술 채록물 및 전자 기록물 등을 포함한다.)로 정하고 있다. 또한, “사료 조사”란 해당 사료의 존재 유무, 물리적 형태, 보존상태, 소장장소, 목록 등을 확인하는 것, “사료 수집”이란 조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료를 복제·구매하거나 대여·기증·위탁 받아 소장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그리고, “편찬”이란 사료 및 한국사 연구 결과물을 편집하여 출판하는 것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서비스 등의 전자적 형태로 가공하여 제공하는 것을 말하는데, “한국사정보화”를 사료와 한국사와 관련된 콘텐츠를 전자적 형태로 수집·가공·제작·제공하는 것을 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사 학습과 역사인식 능력개발을 위하여 전문가·교원·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한국사 연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기록관리 프로세스를 표현만 달리하여 그대로 적용하고 있으며, 관련 인력에 대한 교육과 연수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근현대 기록 관련 기관으로 국가보훈처 산하 공공기관<sup>5)</sup>(준정부기관)인 독립기념관이 있는데 기관의 설립과 운영의 근거가 되는 독립기념관법은 “외침(外侵)을 극복(克服)하고 민족의 자주와 독립을 지켜온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자료를 수집·보존·전시·조사·연구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민의 투철한 민족정신을 북돋우며 올바른 국가관을 정립하는 데에 이바지함”<sup>6)</sup>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우리 민족의 국난 극복사와 국가 발전사에 관한 한 공공, 민간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수집·관리한다는 것이다. 또한 생산시기를 특정하지 않아서 그 대상범위가 매우 넓다고 할 수 있다.

교육부 산하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서 위상을 갖고 있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은 한국학중앙연구원 육성법에 의해 설립, 운영되고 있는데, 연구원의 장서각은 조선왕실에서 소장하던 귀중한 고문헌들을 수집·관리하는 도서관이자 연구소이다. 조선의 궁궐에서 보관하던 12만여 책의 왕실도서와 전국에서 수집한 민간 고문헌 6만여 점을 소장하고 있으며, 한국학 자료의 집적(集積)과 연구의 중추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특히 멸실의 위기에 있는 민간 고문헌을 수집하여 과학적 보존을 통해 되살림으로써 한국사의 종합적 연구를 지향하고 있다.<sup>7)</sup> 연구목적의 수집임을 표방하고 있지만, 그 대상에는 민간에서 소장하고 있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공기관을 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으로 구분하고 있다.

6) 독립기념관법 제1조(목적)

7) <https://www.aks.ac.kr/com/cmm/EgovContentView.do?menuNo=1010131000> 한국학중앙연구원 홈페이지 장서각 소개 참조

는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으로서 대한민국의 탄생과 발전을 이끌어온 우리 국민들의 다양한 역사적 경험을 함께 나누고 공감하는 역사문화공간을 표방하며, 관련 자료의 수집, 보존, 편찬, 전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sup>8)</sup>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설립과 초기 운영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꾸준히 주요자료 수집 및 전시 등을 해오는 가운데,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관의 역할에 대한 이해도 높아지고 있다. 사업 중에는 근현대사 주요 사건과 관련한 구술사업도 포함되어 있는데, ‘현대사 디지털아카이브’를 통해 주요 기록물 기증자들을 인터뷰 한 영상자료를 서비스하고 있다.

같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인 국립민속박물관은 우리의 선조들과 오늘날 우리의 일상생활에서부터 일생에 이르기까지 삶의 모습을 조사·연구·수집하고, 이를 전시·보존하고 있다.<sup>9)</sup> 생활양식의 변화에 따라 빠르게 사라지고 있는 일상생활 자료들을 확보하기 위해 구입·기증·기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수집된 자료는 보존처리를 거쳐 민속자료 분류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국립민속박물관에서 실제로 민간 기록을 대하는 양상을 보면 체계적인 민간기록관리는 충분한 준비가 안 되어 있는 듯하다. 지난 2017년 언론보도에 따르면 “2017 울산 민속문화의 해”를 맞이해 국립민속박물관과 울산광역시 북구의 농촌 무릉동, 어촌 구유동에 달곡마을박물관, 제전마을박물관을 만들었다. 지난해 국립민속박물관 조사팀의 1년 현지조사 결과에 주민참여가 더해지면서 주민들의 삶을 온전히 드러내는 두 박물관이 탄생한 것이다. 세월 따라 변화한 마을, 그 곳에서 살아가는 남녀의 삶을 이야기로 담아냈다. 많은 이들이 들고나는 공업도시 울산에서 ‘농촌과 어촌의 주민들은 어떻

8) <http://www.much.go.kr>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홈페이지 조직도 참조

9) <https://www.nfm.go.kr>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소개 참조

게 살아왔을까라는 물음에 답한다. 마을사람들의 삶을 전시물로 보여 준다.”라고 소개하였다.<sup>10)</sup> 당시 필자가 해당 ‘마을박물관’ 두 곳을 견학한 바 개관한 지 1개월도 채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한 곳은 문이 닫혀있어서 마을 사람들에게 수소문을 해서 열쇠를 갖고 있는 분에게 연락을 취해 문을 열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이 필요했다. 또 다른 한 곳은 문은 열어놓았지만 관리하는 사람은 없었고, 찾아오는 사람도 거의 없는 듯했다. 내부에는 마을조사를 거쳐 파악한 마을의 내력에 대하여 스토리라인을 구성하고, 수집한 자료를 전시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부 원본으로 보이는 문서류와 박물관을 전시하고 있었는데 가변형 전시가 아닌 불박이형 전시가 대부분이었으며 보존시설(무더위에 에어컨조차 없었음)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서 기록물의 훼손이 우려스러웠다. 두 곳 모두 관리가 되고 있지는 않았고, 계획을 가진 전시라고 보기도 어려웠으며, 기록물 자체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었다. 한편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의 민속아카이브에서 소장 기록물을 서비스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록물 검색을 하려면 키워드 검색이나 사진, 음원, 영상, 기타로 나뉜 유형검색만 가능해서 손쉽게 이용할 수 없다. 민간기록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국립 기관으로서 취지를 공감할만한 많은 활동을 해 온 점은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구체적인 면에서는 다소 불철저했다는 평가를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한편, 이들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박물관들의 운영근거는 특별히 명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인 것으로 판단된다.

정부조직법 상 문화체육관광부 외청의 위상을 갖고 있는 문화재청은 문화유산의 보존과 가치창출로 민족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으로 세계일류 문화국가 실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이를 위해 1. 문화재 정책 및 조사연구 품질향상과 전

10)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3\\_0000039945&cID=10701&pID=10700](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0713_0000039945&cID=10701&pID=10700)(2021년 6월 15일 검색)

문인력 양성으로 문화재 보존관리의 기반 확충 2. 문화재의 사회, 역사, 경제적 가치 증진을 위해 문화재 보존 관리의 품질 제고 3. 문화재의 향유기회 확대로 문화재의 가치를 국내 및 국제사회에 확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sup>11)</sup>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란 인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형성된 국가적·민족적 또는 세계적 유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가 큰 다음의 유형을 말하는 것으로 1. 유형문화재 : 건조물, 전적(典籍: 글과 그림을 기록하여 묶은 책), 서적(書跡), 고문서, 회화, 조각, 공예품 등 유형의 문화적 소산으로서 역사적·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과 이에 준하는 고고자료(考古資料), 2. 무형문화재: 여러 세대에 걸쳐 전승되어 온 무형의 문화적 유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전통적 공연·예술 나.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다.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라. 구전 전통 및 표현 마.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바.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사.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3. 기념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것(가. 절터, 옛무덤, 조개무덤, 성터, 궁터, 가마터, 유물 포함층 등의 사적지(史蹟地)와 특별히 기념이 될 만한 시설물로서 역사적·학술적 가치가 큰 것 나. 경치 좋은 곳으로서 예술적 가치가 크고 경관이 뛰어난 것 다. 동물(그 서식지, 번식지, 도래지를 포함한다), 식물(그 자생지를 포함한다), 지형, 지질, 광물, 동굴, 생물학적 생성물 또는 특별한 자연현상으로서 역사적·경관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큰 것) 4. 민속문화재: 의식주, 생업, 신앙, 연중행사 등에 관한 풍속이나 관습에 사용되는 의복, 기구, 가옥 등으로서 국민생활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을 의미한다. 한편, 문화재청장은 국가지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

11) <https://www.cha.go.kr> 문화재청 홈페이지 소개 참조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시·도 지정문화재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화재청이 설명하는 문화재에 대한 규정은 “문화재란 보존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문화유산”이다. 그런데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에서는 “문화유산”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
- 나.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를 보존·보호하기 위한 보호물 및 「문화재보호법」 제2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 보호구역
- 다. 가목의 규정에 따른 문화재와 나목의 규정에 따른 보호물 및 보호구역에 준하여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것

문화재와 문화유산의 범주 및 상호관계가 다소 혼란스런 감이 있는 대목인데, 이를 근거로 기록유산을 문화유산의 범주 안에 두고 있으며, 기록유산을 금석자료, 종이자료, 목재자료로 구분하고 있다.

이 밖에 지방문화원법에서는 각 문화원이 지역문화(향토자료를 포함한다)의 발굴·수집·조사·연구 및 활용하는 것을 정하고 있고, 재단법인 한국국학진흥원은 민간에 소장된 기록유산을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고 이를 폭넓게 연구하여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5년에 설립되었으며 국학자료의 조사 수집 및 정리 보존을 하는 것을 자 기관의 기능으로 밝히고 있다.<sup>12)</sup> 국립중앙도서관, 국회도서관 등의 주요 도서관도 대 국민 활동의 일환으로 민간기록을 수집하는 활동을 하고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국가 차원의 기록, 민간기록에 대해서는 그 규정이 다양하고 중첩되며 때론 상이해서 혼돈스러운 측면이 있다. 최근

12) <https://www.koreastudy.or.kr> 한국국학진흥원 소개 참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또한 그러한 혼돈을 가중시키고 있다.<sup>13)</sup> 법을 제안한 이유를 민간 기록문화에 대한 효율적인 수집과 보존 등 관리가 미흡하여 민간기록문화가 훼손, 멸실되거나 도난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 기록문화를 체계적으로 수집, 보존하고 연구 및 활용 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히고 있다.<sup>14)</sup> 이 법률안에서는 “민간 기록문화”란 1945년 이전에 생산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도서, 목판,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송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로 정의하고 있어서, 현행 공공기록물관리법과도 상충되는 측면이 있다.

## 2) 국가기록원의 활동

국가기록원에서는 이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가기록원에서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는 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공공기록물 관리법에는 민간 기록물을 포함한 공공기록물이 모두 적용대상으로 규정되어 있고, 국가기록관리 체계 안에서 통합적으로 관리되고 있는데, 국회에 제안된 법은 그 체계를 무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미 공공기록물에서 민간기록물을 포함하여 관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록물에서 민간기록물을 별도로 구분해내기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것이다. 셋째, 공공기록물 관리법에서 이미 민간기록물의 개념, 관리수행주체, 관리체계 및 업무 내용 등을 상세히 교정하고 있어서 업무

13) 이 법률안 제2조(정의)에서 ““민간 기록문화”란 1945년 이전에 생산되어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지닌 문서·도서, 목판, 현판 등 기록물과 이를 보존·전송시켜 온 기록물 관련 문화를 말한다.”라고 표현하였다.

14) 2020년 12월 28일자 “민간 기록문화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이병훈의원 대표발의)” 제안이유 참조

중복 및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논거를 갖고 2021년 1월부터 문화체육관광부, 법제처 등에 국가기록원의 의견을 보냈으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법안소위의 진행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 한다.<sup>15)</sup>

국가기록원은 지난 2020년 본격적으로 민간기록관리 분야 담당직원을 선정하고 민간기록관련 각종 토론회 등을 개최하거나 참여하고 있다. 물론 국가기록원은 그 이전에도 ‘민간기록 수집’, ‘기록사랑마을’, ‘내고장 역사찾기’ 등의 민간아카이빙 관련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하지만 체계를 갖추고 지속적으로 대응해오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우선 공공기록물관리법에서 민간기록을 공공기록물의 범주에 포함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민간기록’에 대한 개념은 ‘민간에서 생산, 소장’한 것이라는 것 외에는 구체적으로 정립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동법에 의하면 민간기록을 수집할 수 있는 기관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 헌법기록물관리기관,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이며 기록관, 특수기록관, 대통령기록관은 수집기능을 부여받지 못하고 있다. 민간기록에 대한 개념과 대응체계가 형성한 가운데 국가기록원에서는 관련 정책을 체계적으로 제시한 바가 아직은 없다. 차제에 국가기록원에서는 소수의 담당직원이 민간기록관리 현황조사, 대책마련 등의 현안 대응에 머무르지 말고 우리나라 중앙기록물 관리기관으로서 중장기적인 정책과 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서는 졸고(손동유, 2020)에서 공공기록물관리법 점검, 정책마련, 범국가적 기록관리체계 재정립 등을 제안한 바 있다.

민간아카이빙에 대하여 범 국가차원에서 체계를 정립하는 것은 각

---

15) 2021년 6월 18일 한국기록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국가기록원 김명옥 사무관의 「민간기록문화보존법관련 주요 쟁점과 대응 현황」 발표문 참조

기관의 정체성에 부합하게 활동하되 상호 업무의 효율을 높이며 무엇보다 이용자들에게 효과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필요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적인 지향이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각 기관이 설립된 배경이 있고, 현재까지 활동해 온 역사와 각 기관마다 나름의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인위적으로 업무를 통합, 분배하는 제어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기관들의 기능과 역할을 통제하기 보다는 지금까지의 역할을 존중하되 향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소장 정보와 기록을 공유하고, 활동에 있어서 협력과 조율을 하는 방향이 현실적이라고 본다. 이러한 사정을 반영하여 앞서 언급한 '지방기록문화창달위원회'와 같은 제안도 있었고, 지방자치단체, 시민사회운동단체, 향토사학자 등과 협의하는 가운데 대학 부설로 '지방기록문화연구소(원)'을 설립하여 각 이해 당사자들의 필요와 요구를 종합하여 내실 있는 지방기록관리운동을 조직하자(지수결, 2001)는 창의적인 제안도 있었다.

지난 논의와 제안을 계승하는 차원에서 가칭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제안한다. 앞선 제안들은 '지방'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으로서, 본 고에서는 국가차원의 민간기록관련 기관 간 정보를 공유하고 협력하는 체계를 제안하는 바이다. 성공하지는 못했지만 과거 해외소재 한국관련 역사자료 수집기관간의 협력의 경험을 참고할 필요도 있고, 온라인을 기반으로 협력하여 현재에도 서비스를 하고 있는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sup>16)</sup> 같은 선행 경험의 성과와 한계도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16)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koreanhistory.or.kr>

## 4. 민간 기록관리법 논의의 필요성과 방향

### 1) 현황과 특징

이상의 고찰을 통해서 민간 기록관리의 현장의 특징과 상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민간영역의 기록관리는 자발적으로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는데, 이를 뒷받침 할 법·제도적 근거가 미미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의지 있는 인사들이나 집단에서 자발적, 개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또한 기록물을 장기적으로 보존할 여건을 마련하는 것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빙의 지속성을 보장할 수 없는 형편이다.

둘째, 사회적으로 축적된 경험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기록관리를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막연함과 어려움이 있다. 여러 곳에서 ‘주민 아카이빙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지만, 교육내용의 편차가 다양해서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민간영역의 기록관리 양상은 매우 다양하고 폭이 넓다. 주체도 개인, 민간공동체, 지역의 문화재단 및 문화원, NGO, NPO 등으로 다양하며, 관리대상이 되는 기록물의 유형과 조건도 매우 다양하다. 각 주체와 조건에 적합한 체계와 환경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민간기록관리 분야의 현황에 비추어 볼 때 그 활동의 근거와 지원을 위해 법과 제도를 모색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하지만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에 우선해서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에서 평가하는 기록의 가치와 민간영역의 기록의 가치는 그 기준이 전혀 다르다. 개인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다르고, 기능마다 다르고, 목적과 지향에 따라 다르다. 현

행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수정이나 확장으로 결코 해결될 수 없을 것이다. 다양성이 핵심인 민간 아카이빙에 있어서 함부로 원칙을 정해서 도입하거나 표준화된 매뉴얼을 제시할 일이 아니다. 필요하다면 우선은 참고할 사례로서 제공하고, 경험이 축적된 후에 제도화 하면 된다.

그러나 ‘아카이빙 참여주체의 역량’과 ‘보존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민간기록의 주체로 민간이 자리매김 되는 관건적 요소이므로 이들 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과 지원이 필요하다. 물론 보존환경은 일방적으로 보존공간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공간 제공의 방법은 공간을 무상 대여, 조건부 대여하거나 공유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고, 기록물을 중심으로 사고하면서 보존환경 마련을 위해 지원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는데, 이 같은 다양한 경우의 수를 두고 협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아카이빙 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공급으로 민간영역의 역량을 높여갈 필요가 있다. 공공기록관에서 민간 기록관리현장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통해 정기적이고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간담회, 컨설팅 등의 자리를 통해 다양한 케이스에 대하여 대처방안을 만들어 나가는 기록전문가와 민간 활동가의 협력을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구상의 핵심은 민간 아카이빙 활동을 보호하고, 지속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 2)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의 필요성

민간기록의 가치와 맥락 그리고 내용의 성격상 기존 공공기록물이 가진 행정적 성격을 넘어 문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접근과 논의를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계획 하에 관련 주체를 정하고 꾸준한 협력과 논의를 해나가야 한다. 즉, 국가기록원은 행정안전부 소속이지만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의 여러 기관에서

도 민간기록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범 국가차원의 근본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민간 아카이빙은 한 시기 유행처럼 번지는 것이 아니다. 민간기록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시민의식의 성숙, 제도적 민주주의의 발전과정을 통해 역사의 진보를 이루어내는 과정에서 얻어낸 성과이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할 일이 아니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역사의식과 철학을 갖고 긴 안목에서 계획을 세워나가야 하는 분야이다. 우리나라 기록관리법은 하향식(top-down)으로 정착된 경험을 갖고 있다. 각 영역에서 수행하고 있던 것을 종합하고 다듬어서 법제화 했다고보다는, 법과 제도를 먼저 설계하고 각급 기관에 전파한 모양새를 띄었다. 옳고 그름으로 판단할 사안이라기보다는 우리나라 현대사의 특성상 기록관리 법과 제도가 정착하는 상황의 특징이라고 하는 편이 적당할 것이다. 민간 아카이빙은 사뭇 양상이 다르다. 개별적, 자발적,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민간 아카이빙을 어떻게 법, 제도로써 소화하느냐의 문제이다. 이러한 상황은 민간 아카이빙 분야에 있어서 전에 없는 기회이다.

다시 한 번 관련 기관간의 협의체계인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제안한다. 이 협의체에서 추구해야 할 협력 내용은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이다.

우선 현재까지 소장하고 있는 각 기관의 민간기록관련 정보와 기록을 특별한 사정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공유하면서 중복사업과 활동을 최소화하며, 정보와 기록을 통합해나가야 한다. 이들 정보와 기록은 궁극적으로 공개 및 서비스되어 널리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소장할 때보다 공유할 때 그 활용성이 늘어난다는 것은 경험적 교훈이기도 하다. 또한 소장 정보와 기록을 공유함으로써 그간 자기기관의 활동을 세간에서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민간기록의 유형, 소장지역, 소장자 등에 따라 기관의 특·장점을 반영하여 더욱 잘 대응할 수 있는 기관이 주도하도록 업무와 기능을 조율할 수도 있다. 물론 상호 협력적인 논의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이를 통해 업무의 효율을 꾀할 수 있고, 각 기관의 정체성을 심화해 나가는 계기가 될 것이고,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를 설계하는데 유효한 시도가 되기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막연한 미래로 넘겨버릴 사안도 아니다. 국가적으로 민간기록관리를 체계화 한다는 것은 반드시 국가기관이 민간기록관리를 독점한다는 의미만은 아니다. 관련 국가기관들은 어떻게 기능할 것이고, 민간에서는 어떻게 지위, 역할, 책임범위 등을 부여받고 활동할 것인가를 포괄적으로 정립하는 일이다. 민간기록을 공공적 차원에서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 전반의 기록관리를 이상적으로 설계하는 일이다. 그 성과는 모두 국가 구성원에게 돌아갈 것이다. 앞서 제시한 민간기록관련 국가기관 중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법에 근거해서 명시적으로 활동해 온 기관이 국가기록원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이 논의를 국가기록원에서 시작하고 중심으로 활동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국가기록원은 민간아카이빙에 대하여 팀 신설 등 장기적인 대응이 가능한 조직체계를 갖추고,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를 일구어 나가기 바란다. 중앙정부, 관련 기관, 학계 등에 제안하고 언론 등을 통해 공론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가기록원은 한국기록전문가협회,<sup>17)</sup> (준)한국기록활동가네트워크<sup>18)</sup> 등과

---

17) 사단법인 한국기록전문가협회는 홈페이지(<https://www.archivists.or.kr>)를 통해 “기록인의 사명을 정립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기록전문가의 커뮤니티를 지향하며, 기록관리 분야의 교육 및 연구, 교류와 협력을 통해 기록전문가의 권익 보호와 직업윤리의 신장 및 우리사회의 민주주의와 기록관리 부문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을 지향하는 기록관리 전문가 단체”임을 밝히고 있다.



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기록관리분야의 다양한 전문가들의 견해와 현장 활동가들의 경험을 참고 및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민간 기록관리 현장에 대한 지원을 병행해야만 한다. 민간 기록관리에 대한 정부와 공공기관의 체계를 갖추는 작업과 민간 현장에 대한 지원은 우선순위를 정해서 할 일이 아니라 모두 중요하고 시급한 일이기 때문이다.

## 5. 맺음말

민간 아카이브에 관한 논의는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과 시행 초기부터 꾸준히 있어왔다. 지방기록관 및 지방기록관 설립을 통해 민간 아카이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자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는데, 여기서 지방기록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록은 물론이고 주민들이 생산, 소장하였거나 주민생활을 담고 있는 기록 등 민간기록을 포함했던 것이다. 이러한 학계의 논의와 함께 지방자치와 분권을 위한 운동차원의 노력도 있어왔다. 이들 노력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단체설립과 활동, 법 개선, 연구의 심화 등 점진적인 성과를 이룬 측면이 분명히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많은 관심과 논의가 있는 민간 아카이빙은 이러한 기록관리계의 역사적 흐름에서 보아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민간 아카이빙이 사회적 관심사가 된 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법, 정보공개법 등 제도의 마련, 디지털 환경의 정착, 마을공동체 활동의 의미와 가치 확산 등 인프라, 방법론, 의식의 발전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기록을 다루는 국가차원의 기관들은 매우 여

---

18) 2019년 7월과 10월 두 차례의 모임을 통해 민간분야 기록활동가들의 정보교류와 협력을 위한 네트워킹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세우고, 준비단계에 있는 임의조직이다.

러 기관이 있으며, 업무수행의 근거도 상이하고 소속된 중앙행정기관도 여럿이라서 다소 복잡한 사정이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 범국가적 민간아카이빙의 계획, 전략, 로드맵을 수립해 나가는 협의체를 추진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칭 ‘민간기록 관리기관 협의체’가 구성된다면, 첫째, 소장정보와 기록의 협력, 둘째, 기관 간 업무와 기능 조율, 셋째, 범국가적 민간기록관리체계 구축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논의에 국가기록원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가기록원은 관련 기관 중 상대적으로 체계적인 법에 근거해서 명시적으로 활동해온 우리나라의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이기 때문이다. 공공기록물관리법 제정으로 우리나라의 현대적 기록관리 제도가 마련된 이후 지금까지 민간아카이빙에 대한 논의와 활동이 풍성한 적은 없었다. 모처럼 맞이한 지금의 기회를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지 말고 장기적 안목으로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건홍 (2006). 한국 국가기록 관리 체제 ‘혁신’의 성격 : 기록관리법 개정안 분석을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13, 10.
- 곽건홍 (2009). 자율과 분권 연대를 기반으로 한 국가기록관리 체제구상. 기록학연구, 22, 16.
- 곽건홍 (2011). 일상아카이브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소론. 기록학연구, 29.
- 국가기록원 (2009). 국가기록관리 선진화 전략.
- 김득중 (2005). ‘국가기록관리혁신로드맵’의 추진경과와 의의. 한국국가기록연구원 소식, 20.
- 김익한 (2010). 마을 아카이빙 시론. 기록학연구, 26.
- 박찬승 (2000). 외국의 지방기록관과 한국의 지방기록자료관 설립방향. 기록학연구, 창간호.
- 손동유 (2020). 민간 아카이브 활성화의 의미와 과제 : 마을공동체 아카이브를 중심으로. 기록학연구, 65.

- 윤은하 (2012).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33.
- 이영남 (2008). 마을아르페 시론 : 마을 차원의 '책, 기록, 역사 그리고 치유와 창업의 커뮤니티'를 위한 제안. 기록학연구, 18.
- 이영학 (2010). 기록문화와 지방자치. 기록학연구, 26.
- 이정은, 김유경, 김건 (2020). 민간기록물관리에 관한 조례 현황 연구. 기록학연구, 64.
- 지수걸 (2001).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의 기능과 역할. 기록학연구, 3.
- 지수걸 (2009).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립의 방향과 방법. 기록학연구, 21.